

주주님께

제17기 1회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23조에 의거 제17기 임시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공고시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5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09월 24일 (목) 오전 9:00

2.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중앙대로 139 (주)에이비프로바이오 본사 3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부의안건

- 제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자 안원환](신규선임)
 -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자 권형석](신규선임)
- 제 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의 건
 - 제3-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전재홍]
 - 제3-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기준환]
 - 제3-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권형석]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또는 주주총회참석장
-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또는 주주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주주 인적사항 기재, 인장날인 또는 자필사인, 법인 주주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 증명서 첨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단, 1%이하 소액주주의 경우 주주총회 참석장이 서면으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 참석장은 지참하지 아니하셔도 되며, 신분증 또는 위임장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당사에 비치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권리주주임을 확인하겠습니다.)

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권유에 관한 사항 : 우리회사는 상법 제 368 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 조 제 5 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에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0년 09월 14일 ~ 2020년 09월 23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3) 행사방법 :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4)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8. 기타사항

당사는 금번 주주총회에서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주주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0년 09월 09일

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
대표이사 양진상 (직인생략)

<별첨>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정관 변경(안)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15. (생략)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15. (전과 同)	-
16. 전자상거래업		41호에 포함
17. 자회사, 관계회사자금 및 업무지원, 구매대행업 18. 유통, 물류 시스템 개발 및 판매 유지보수 19. IT기기 제조 및 유통	16. 자회사, 관계회사자금 및 업무지원, 구매대행업 17. 유통, 물류 시스템 개발 및 판매 유지보수 18. IT기기 제조 및 유통	17호~19호를 16호~18호로 변경
20. 유아용 기기제조 및 유통 21. 교육용 콘텐츠 제작 및 판매		사업목적 삭제
22. 연구개발업		39호에 포함
23. 지적재산권 보유 및 투자업 24. 지적재산권 분석 및 컨설팅업 25. 지적재산권 거래 및 중개서비스업 26.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및 임대업 27.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28. 부동산 투자개발 및 공급업 29.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30. 원전해체업 31. 암,치매 등의 질병 진단법 개발 및 판매 32. 암,치매 등의 예방 및 치료제 제조 및 판매	19. 지적재산권 보유 및 투자업 20. 지적재산권 분석 및 컨설팅업 21. 지적재산권 거래 및 중개서비스업 22.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및 임대업 23.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24. 부동산 투자개발 및 공급업 25.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26. 원전해체업 27. 암,치매 등의 질병 진단법 개발 및 판매 28. 암,치매 등의 예방 및 치료제 제조 및 판매	23호~32호를 19호~28호로 변경
33. 연구지원서비스		39호에 포함
34. 항체신약개발, 제조 및 판매사업 35. 항체 및 단백질 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사업 36. 바이오 단백질 재조합 의약품 연구개발업 37. 진단 및 바이오칩 개발, 제조 및 판매사업	29. 항체신약개발, 제조 및 판매사업 30. 항체 및 단백질 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사업 31. 바이오 단백질 재조합 의약품 연구개발업 32. 진단 및 바이오칩 개발, 제조 및 판매사업	34호~37호를 29호~33호로 변경
	33. 마스크 제조 및 판매 34. 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업 35. 섬유 제조 및 판매업	사업목적 추가
	36. 위 각호에 관련된 제조업	각호와 관련된 사업을 세분화하여 기재
38. 위 각호에 관련된 유통업 및 수출입업	37. 위 각호에 관련된 도소매 및 유통업 38.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38호를 37호~ 38호로 변경
	39.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 연구지원 및 개발업 40. 위 각호에 관련된 용역과 기술의 제공 및 자문업 41. 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업 42. 위 각호에 관련된 유지 보수업	각호와 관련된 사업을 세분화하여 기재

현 행	개 정 (안)	변경의 목적
39.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업일체	43.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업일체	39호를 43호로 변경
제 4조(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 방법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gint.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4조(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 방법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bprobio.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홈페이지 주소 변경
제 7조(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71,000주로 한다.	제 7조 “삭제”	조문 삭제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 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 ③ (생략)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 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 ③ (전과 同)	주주명부의 폐쇄 기간 단축
제40조 (이사의 의무) ① ~ ③ (생략)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이사의 의무) ① ~ ③ (전과 同)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인한 변경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본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리고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일을 정하고 그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③ (생략)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본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리고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일을 정하고 그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③ (전과 同)	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인한 변경
(신설)	제41조1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인한 신설
제45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생략)	제45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전과 同)	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인한 변경

현 행	개 정 (안)	변경의 목적
<p>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 6 장 감 사</p>	<p>제 6 장 감사위원회</p>	<p>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인한 변경</p>
<p>제48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p>	<p>제4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내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한다.</p>	<p>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인한 변경</p>
<p>제49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p>	<p>제49조(감사위원회 위원 및 대표의 선임) 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p>	<p>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인한 변경</p>
<p>제50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50조 “삭제”</p>	<p>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인한 조문 삭제</p>
<p>제51조(감사의 직무와 의무)</p>	<p>제51조(감사위원회의 직무와 의무)</p>	<p>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인한 변경</p>

현 행	개 정 (안)	변경의 목적
<p>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p> <p>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 40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p> <p>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p> <p>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 해임 및 감독하며 기타 관련 법령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정한 권한을 가진다.</p> <p>⑦ 감사위원회는 제 1항 내지 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p> <p>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p> <p>⑨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p>	
<p>제52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52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인한 변경</p>
<p>제53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 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3조 “삭제”</p>	<p>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인한 조문 삭제</p>

현 행	개 정 (안)	변경의 목적
<p>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p>		
	<p>제53조1 (감사위원회 규정) 본 정관에 규정된 바에 추가하여 이사회는 감사 위원회의 구성,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및 여타의 사항을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p>	<p>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인한 신설</p>
<p>제55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p> <p>① (생략)</p> <p>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 ⑤ (생략)</p> <p>⑥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50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p> <p>① (전과 同)</p> <p>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 ⑤ (전과 同)</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p> <p>⑦ 제6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인한 변경</p> <p>재무제표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만으로도 승인 할 수 있다는 조항 명문화</p>
<p>제56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제56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인한 변경</p>

현 행	개 정 (안)	변경의 목적
<p>제59조(현물출자) 본 회사의 설립당시 현물출자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p>	<p>제59조 “삭제”</p>	<p>조문 삭제</p>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자 안원환]

생년월일	임기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비고
1977년02월09일	3년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	신규

주된 직업	세부경력	
	기간	내용
-	-	(주)필룩스 대표이사 교보증권 기업금융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자 권형석]

생년월일	임기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비고
1967년05월21일	3년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	신규

주된 직업	세부경력	
	기간	내용
(주)에이비프로바이오 이사	2017.04~2020.04 2016.06~2016.12 2015.08~2016.06 2010.08~2016.05	삼원테크(주) 기획관리팀 이사 (주)빅스트바이오홀딩 경영기획팀 부장 (주)에스마크 경영지원본부 부장 3노드디지털그룹유한공사 이사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전재홍]

생년월일	임기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비고
1975년09월20일	3년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	신규

주된 직업	세부경력	
	기간	내용
이촌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주)수젠택 감사	-	KPMG 삼정회계법인

- 제3-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기준환]

생년월일	임기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비고
1968년06월27일	3년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	신규

주된 직업	세부경력	
	기간	내용
-	-	JPMORGAN 해외투자부서CIO, 고객 포트폴리오 매니저 CJ ASSET 해외 및 대체투자 펀드 매니저 DONGBU 해외 및 대체투자 펀드 매니저 NARA MERCHANT BANK 투자 매니저 DONGSUH 옵션 및 선물 애널리스트

- 제3-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권형석]

생년월일	임기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비고
1967년05월21일	3년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	신규

주된 직업	세부경력	
	기간	내용
(주)에이비프로바이오 이사	2017.04~2020.04 2016.06~2016.12 2015.08~2016.06 2010.08~2016.05	삼원테크(주) 기획관리팀 이사 (주)넥스트바이오홀딩 경영기획팀 부장 (주)에스마크 경영지원본부 부장 3노드디지털그룹유한공사 이사